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경상대학교”를 “경상국립대학교”로 한다.

별표 1 중 총 계 “26,262”를 “26,405”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20,072”를 “20,209”로 하며, 대학 계 “18,269”를 “18,394”로 하고, 총장 “38”을 “37”로 하며,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5,403”을 “15,525”로 하고, 조교 “2,828”을 “2,832”로 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427”을 “428”로 하고, 교사 “395”를 “396”으로 하며,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69”를 “80”으로 하고, 보건교사 “34”를 “38”로 하며, 영양교사 “24”를 “28”로 하고, 사서교사 “9”를 “12”로 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6,190”을 “6,196”으로 하고, 행정주사 “911”을 “918”로 하며, 의료기술주사 “7”을 “6”으로 하고, 식품위생주사 “28”을 “26”으로 하며, 방송통신주사 “14”를 “1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596”을 “599”로 하며, 직업상담주사보 “4”를 “5”로 하고, 공업주사보 “160”을 “155”로 하며, 공업주사보 155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를 신

설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5”를 신설하며, 수의주사보 “9”를 “10”으로 하고, 환경주사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1 중 전산주사보 “101”을 “100”으로 하고, 조리주사보 “8”을 “9”로 하며, 공업서기 “143”을 “138”로 하고, 공업서기 138 다음에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7”를 신설하며, 시설서기 “52”를 “51”로 하고, 전산서기 “45”를 “47”로 하며, 행정서기보 “530”을 “545”로 하고, 직업상담서기보 “3”을 “4”로 하며, 공업서기보 “84”를 “79”로 하고, 공업서기보 79 다음에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8”를 신설하며, 의료기술서기보 “3”을 “5”로 하고, 식품위생서기보 “4”를 “5”로 한다.

별표 1 중 시설서기보 “41”을 “39”로 하고, 전산서기보 “24”를 “25”로 하며, 운전서기보 “217”을 “216”으로 하고, 위생서기보 “85”를 “76”으로 하며, 위생서기보 76 다음에 “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13”를 신설하고, 조리서기보 “37”을 “31”로 하며, 통신운영주사 “2”를 “1”로 하고, 전기운영주사 “6”을 “5”로 하며, 기계운영주사 “7”을 “6”으로 하고, 기계운영주사보 “13”을 “10”으로 하며, 전기운영서기 “7”을 “6”으로 한다.

별표 1 중 기계운영서기 “11”을 “10”으로 하고, 전화상담운영서기보 “9”를 “8”로 하며, 전기운영서기보 “12”를 “10”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12”를 “100”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노무 담당) “26”을 “25”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심리상담 담당) “9”를 “1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 계 “26,262”를 “26,405”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20,072”

를 “20,209”로 하며, 대학 계 “18,269”를 “18,394”로 하고, 총장 “38”을 “37”로 하며,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5,403”을 “15,525”로 하고, 조교 “2,828”을 “2,832”로 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427”을 “428”로 하고, 교사 “395”를 “396”으로 하며,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69”를 “80”으로 하고, 보건교사 “34”를 “38”로 하며, 영양교사 “24”를 “28”로 하고, 사서교사 “9”를 “1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일반직 계 “6,190”을 “6,19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352”를 “349”로 하며, 행정주사 “906”을 “913”으로 하고, 의료기술주사 “7”을 “6”으로 하며, 식품위생주사 “28”을 “26”으로 하고, 방송통신주사 “14”를 “1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573”을 “578”로 하고, 직업상담주사보 “4”를 “5”로 하며, 공업주사보 “161”을 “156”으로 하고, 공업주사보 156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를 신설하며,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5”를 신설하고, 수의주사보 “9”를 “1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환경주사보 “10”을 “9”로 하고, 전산주사보 “91”을 “90”으로 하며, 조리주사보 “8”을 “9”로 하고, 공업서기 “143”을 “138”로 하며, 공업서기 138 다음에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7”를 신설하고, 시설서기 “52”를 “51”로 하며, 전산서기 “45”를 “47”로 하고, 행정서기보 “529”를 “545”로 하며, 직업상담서기보 “3”을 “4”로 하고, 공업서기보 “84”를 “79”로 하며, 공업서기보 79 다음에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8”를 신설하고, 의료기술서기보 “3”을 “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식품위생서기보 “4”를 “5”로 하고, 시설서기보 “41”을 “39”로 하며, 전산서기보 “24”를 “25”로 하고, 운전서기보 “217”을 “216”으로 하며, 위생서기보 “84”를 “75”로 하고, 위생서기보 75 다음에 “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13”를 신설하며, 조리서기보 “37”을 “31”로 하고, 통신운영주사 “2”를 “1”로 하며, 전기운영주사 “8”을 “7”로 하고, 기계운영주사 “7”을 “6”으로 하며, 기계운영주사보 “13”을 “10”으로 하고, 사무운영주사보 “6”을 “4”로 한다.

별표 1의2 중 전기운영서기 “7”을 “6”으로 하고, 기계운영서기 “11”을 “10”으로 하며, 전화상담운영서기보 “9”를 “8”로 하고, 전기운영서기보 “12”를 “10”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06”을 “9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노무 담당) “26”을 “25”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심리상담 담당) “9”를 “10”으로 한다.

별표 2의 구분의 경상대학교란 “경상대학교”를 “경상국립대학교”로 한다.

별표 3 강원대학교 다음에 “1,251”을 신설하고, 1,251 다음에 “285”를 신설하며, 285 다음에 “1,536”를 신설하고, “1,246”를 삭제하며, “284”를 삭제하고, “1,530”를 삭제하며,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삭제하고, “228”를 삭제하며, “79”를 삭제하고, “307”를 삭제하며, 경북대학교 다음에 “1,592”를 신설하고, “1,571”를 삭제한다.

별표 3 344 다음에 “1,936”을 신설하고, 1,936 다음에 “경상국립대학교”를 신설하며, 경상국립대학교 다음에 “1,253”를 신설하고, 1,253 다음에

“369”를 신설하며, 369 다음에 “1,622”를 신설하고, “1,915”를 삭제하며, “경상대학교”를 삭제하고, “1,018”를 삭제하며, “290”를 삭제하고, “1,308”를 삭제하며, 공주대학교 다음에 “752”를 신설하고, “746”를 삭제한다. 별표 3 210 다음에 “962”를 신설하고, “956”를 삭제하며, 금오공과대학교 다음에 “270”를 신설하고, “265”를 삭제하며, 86 다음에 “356”를 신설하고, “351”를 삭제하며, 393 다음에 “132”를 신설하고, 목포해양대학교 다음에 “145”를 신설하며, 145 다음에 “119”를 신설하고, 119 다음에 “264”를 신설하며, “143”를 삭제하고, “118”를 삭제한다.

별표 3 “261”을 삭제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다음에 “225”를 신설하며, “218”를 삭제하고, 222 다음에 “447”를 신설하며, “440”를 삭제하고, 부경대학교 다음에 “763”를 신설하며, 763 다음에 “277”를 신설하고, 277 다음에 “1,040”를 신설하며, “753”를 삭제하고, “276”를 삭제하며, “1,029”를 삭제하고, 부산대학교 다음에 “1,516”를 신설한다.

별표 3 “1,503”을 삭제하고, 336 다음에 “1,852”를 신설하며, “1,839”를 삭제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음에 “460”를 신설하며, 460 다음에 “155”를 신설하고, 155 다음에 “615”를 신설하며, “450”를 삭제하고, “154”를 삭제하며, “604”를 삭제하고, 전남대학교 다음에 “1,570”를 신설하며, “1,563”를 삭제하고, 424 다음에 “1,994”를 신설한다.

별표 3 “1,987”을 삭제하고, 전북대학교 다음에 “1,287”를 신설하며, “1,278”를 삭제하고, 307 다음에 “1,594”를 신설하며, “1,585”를 삭제하고, 제주대학교 다음에 “844”를 신설하며, 844 다음에 “264”를 신설하고, 264 다

음에 “1,108”를 신설하며, “840”를 삭제하고, “263”를 삭제하며, “1,103”를 삭제하고, 창원대학교 다음에 “407”를 신설한다.

별표 3 충남대학교 다음에 “1,128”을 신설하고, “1,123”를 삭제하며, 256 다음에 “1,384”를 신설하고, “1,379”를 삭제하며, 충북대학교 다음에 “1,006”를 신설하고, “999”를 삭제하며, 241 다음에 “1,247”를 신설하고, “1,240”를 삭제하며, “405”를 삭제하고, 160 다음에 “567”를 신설하며, “565”를 삭제하고, 한국체육대학교 다음에 “185”를 신설한다.

별표 3 “179”를 삭제하고, 82 다음에 “267”를 신설하며, “261”를 삭제하고, 한국해양대학교 다음에 “327”를 신설하며, “324”를 삭제하고, 196 다음에 “523”를 신설하며, “520”를 삭제하고, 한밭대학교 다음에 “342”를 신설하며, “335”를 삭제하고, 103 다음에 “445”를 신설하며, “438”를 삭제하고, 경인교육대학교 다음에 “190”를 신설한다.

별표 3 “189”를 삭제하고, 84 다음에 “274”를 신설하며, “273”를 삭제하고, 150 다음에 “48”를 신설하며, 48 다음에 “182”를 신설하고, 부산교육대학교 다음에 “134”를 신설하며, “135”를 삭제하고, “48”를 삭제하며, “183”를 삭제하고, 서울교육대학교 다음에 “161”를 신설하며, “160”를 삭제하고, 52 다음에 “213”를 신설한다.

별표 3 “212”를 삭제하고, 77 다음에 “55”를 신설하며, “54”를 삭제하고, “131”를 삭제하며, 합 계 다음에 “20,209”를 신설하고, 20,209 다음에 “6,196”를 신설하며, “20,072”를 삭제하고, “6,190”를 삭제하며, 26,262 다음에 “26,405”를 신설하고, “26,26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사무운영주사보 1명은 2023년 9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9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별표 1의2의 정원 중 76명(행정사무관 27명, 행정주사 21명, 사서주사 7명, 환경주사 1명, 시설주사 1명, 전산주사 10명, 행정주사보 1명, 사서주사보 1명, 방호주사보 1명, 위생서기 1명, 전기운영주사 2명, 사무운영주사보 3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26명, 행정주사보 22명, 사서주사보 7명, 환경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0명, 행정서기 1명, 사서서기 1명, 방호서기보 1명, 위생서기보 1명, 전기운영주사보 2명 및 사무운영서기보 3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공업주사보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공업주사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 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u>5퍼센트</u>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 와 같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u>7퍼센트</u>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 라 경북대학교, <u>경상대학교</u> , 공 주대학교, 목포대학교, 부산대 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 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의 과 장급 직위 중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11개 직위를 임기제공무원 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대학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 는 과장급 직위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② ----- ----- ----- <u>경상국립대학교</u> -----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26,262	26,405	+143
교육공무원 계	20,072	20,209	+137
대학 계	18,269	18,394	+125
총장	38	37	-1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5,403	15,525	+122
조교	2,828	2,832	+4
·	·	·	
·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427	428	+1
·	·	·	
·	·	·	
교사	395	396	+1
·	·	·	
·	·	·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69	80	+11
보건교사	34	38	+4
영양교사	24	28	+4
사서교사	9	12	+3
.	.	.	
.	.	.	
일반직 계	6,190	6,196	+6
.	.	.	
.	.	.	
행정주사	911	918	+7
.	.	.	
.	.	.	
의료기술주사	7	6	-1
식품위생주사	28	26	-2
.	.	.	
.	.	.	
방송통신주사	14	13	-1
.	.	.	
.	.	.	
행정주사보	596	599	+3

직업상담주사보	4	5	+1
•	•	•	
•	•	•	
공업주사보	160	155	-5
공업주사보 또는	<신 설>	1	+1
시설주사보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신 설>	5	+5
또는 환경주사보			
•	•	•	
•	•	•	
수의주사보	9	10	+1
•	•	•	
•	•	•	
환경주사보	11	10	-1
•	•	•	
•	•	•	
전산주사보	101	100	-1
•	•	•	
•	•	•	
조리주사보	8	9	+1
•	•	•	
•	•	•	

공업서기	143	138	-5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신 설>	7	+7
•	•	•	
•	•	•	
시설서기	52	51	-1
•	•	•	
전산서기	45	47	+2
•	•	•	
•	•	•	
행정서기보	530	545	+15
직업상담서기보	3	4	+1
•	•	•	
•	•	•	
공업서기보	84	79	-5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신 설>	8	+8
•	•	•	
•	•	•	
의료기술서기보	3	5	+2
식품위생서기보	4	5	+1
•	•	•	

·	·	·	
시설서기보	41	39	-2
·	·	·	
전산서기보	24	25	+1
·	·	·	
·	·	·	
운전서기보	217	216	-1
위생서기보	85	76	-9
위생서기보	또는 <신 설>		
조리서기보		13	+13
조리서기보	37	31	-6
·	·	·	
·	·	·	
통신운영주사	2	1	-1
전기운영주사	6	5	-1
기계운영주사	7	6	-1
·	·	·	
·	·	·	
기계운영주사보	13	10	-3
·	·	·	
·	·	·	

전기운영서기	7	6	-1
기계운영서기	11	10	-1
•	•	•	
•	•	•	
전화상담운영서기보	9	8	-1
전기운영서기보	12	10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112	100	-12
•	•	•	
•	•	•	
전문경력관 나군(노무 담당)	26	25	-1
전 문 경 력 관	9	10	+1
나군(심리상담 담당)			
•	•	•	
•	•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6,262	26,405	+143
교육공무원 계	20,072	20,209	+137
대학 계	18,269	18,394	+125
총장	38	37	-1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5,403	15,525	+122
조교	2,828	2,832	+4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427	428	+1
교사	395	396	+1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69	80	+11

보건교사	<u>34</u>	<u>38</u>	+4
영양교사	<u>24</u>	<u>28</u>	+4
사서교사	<u>9</u>	<u>12</u>	+3
.	.	.	
.	.	.	
일반직 계	<u>6,190</u>	<u>6,196</u>	+6
.	.	.	
.	.	.	
행정사무관	<u>352</u>	<u>349</u>	-3
.	.	.	
.	.	.	
행정주사	<u>906</u>	<u>913</u>	+7
.	.	.	
.	.	.	
의료기술주사	<u>7</u>	<u>6</u>	-1
식품위생주사	<u>28</u>	<u>26</u>	-2
.	.	.	
.	.	.	
방송통신주사	<u>14</u>	<u>13</u>	-1
.	.	.	
.	.	.	

행정주사보	<u>573</u>	<u>578</u>	+5
직업상담주사보	<u>4</u>	<u>5</u>	+1
•	•	•	
•	•	•	
공업주사보	<u>161</u>	<u>156</u>	-5
공업주사보 또는 <u>시설주사보</u>	<u><신 설></u>	<u>1</u>	+1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u>환경주사보</u>	<u><신 설></u>	<u>5</u>	+5
•	•	•	
•	•	•	
수의주사보	<u>9</u>	<u>10</u>	+1
•	•	•	
•	•	•	
환경주사보	<u>10</u>	<u>9</u>	-1
•	•	•	
•	•	•	
전산주사보	<u>91</u>	<u>90</u>	-1
•	•	•	
•	•	•	
조리주사보	<u>8</u>	<u>9</u>	+1
•	•	•	

•	•	•	
공업서기	<u>143</u>	<u>138</u>	-5
<u>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u>	<u><신 설></u>	<u>7</u>	+7
•	•	•	
•	•	•	
시설서기	<u>52</u>	<u>51</u>	-1
•	•	•	
전산서기	<u>45</u>	<u>47</u>	+2
•	•	•	
•	•	•	
행정서기보	<u>529</u>	<u>545</u>	+16
직업상담서기보	<u>3</u>	<u>4</u>	+1
•	•	•	
•	•	•	
공업서기보	<u>84</u>	<u>79</u>	-5
<u>공업서기보 또는</u>	<u><신 설></u>	<u>8</u>	+8
<u>시설서기보</u>			
•	•	•	
•	•	•	
의료기술서기보	<u>3</u>	<u>5</u>	+2
식품위생서기보	<u>4</u>	<u>5</u>	+1

·	·	·	
·	·	·	
시설서기보	<u>41</u>	<u>39</u>	-2
·	·	·	
전산서기보	<u>24</u>	<u>25</u>	+1
·	·	·	
·	·	·	
운전서기보	<u>217</u>	<u>216</u>	-1
위생서기보	<u>84</u>	<u>75</u>	-9
<u>위생서기보</u> 또는	<u><신 설></u>	<u>13</u>	+13
<u>조리서기보</u>			
조리서기보	<u>37</u>	<u>31</u>	-6
·	·	·	
·	·	·	
통신운영주사	<u>2</u>	<u>1</u>	-1
전기운영주사	<u>8</u>	<u>7</u>	-1
기계운영주사	<u>7</u>	<u>6</u>	-1
·	·	·	
·	·	·	
기계운영주사보	<u>13</u>	<u>10</u>	-3
·	·	·	

사무운영주사보	<u>6</u>	<u>4</u>	-2
·	·	·	
전기운영서기	<u>7</u>	<u>6</u>	-1
기계운영서기	<u>11</u>	<u>10</u>	-1
·	·	·	
·	·	·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9</u>	<u>8</u>	-1
전기운영서기보	<u>12</u>	<u>10</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06</u>	<u>96</u>	-10
·	·	·	
·	·	·	
전문경력관 나군(노무 담당)	<u>26</u>	<u>25</u>	-1
전 문 경 력 관	<u>9</u>	<u>10</u>	+1
나군(심리상담 담당)			
·	·	·	
·	·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구분	교육공무원	일반직 · 별정직 · 관리운영직 공무원	계
강릉원주대학교	468	142	610
강원대학교	1,251	285	1,536
경북대학교	1,592	344	1,936
경상국립대학교	1,253	369	1,622
공주대학교	752	210	962
군산대학교	423	183	606
금오공과대학교	270	86	356
목포대학교	393	132	525
목포해양대학교	145	119	26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25	222	447
부경대학교	763	277	1,040
부산대학교	1,516	336	1,85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60	155	615
순천대학교	407	136	543
안동대학교	344	115	459
전남대학교	1,570	424	1,994
전북대학교	1,287	307	1,594
제주대학교	844	264	1,108
창원대학교	407	123	530
충남대학교	1,128	256	1,384
충북대학교	1,006	241	1,247

한경대학교	217	71	288
한국교원대학교	407	160	567
한국교통대학교	383	142	525
한국체육대학교	185	82	267
한국해양대학교	327	196	523
한밭대학교	342	103	445
경인교육대학교	190	84	274
공주교육대학교	137	42	179
광주교육대학교	150	48	198
대구교육대학교	162	48	210
부산교육대학교	134	48	182
서울교육대학교	161	52	213
전주교육대학교	123	41	164
진주교육대학교	119	44	163
청주교육대학교	107	43	150
춘천교육대학교	115	42	157
한국복지대학교	98	39	137
서울맹학교	77	55	132
서울농학교	70	31	101
한국선진학교	67	38	105
한국경진학교	65	35	100
한국우진학교	69	26	95
합 계	20,209	6,196	26,405